

의안번호	2205934
의 퇴 인	김윤의원
회 답 일	2025.02.05.
추계번호	24C5526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5억 2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연도 구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 위원회(안 제26조의2)	504	504	504	504	504	2,520	504

주: 향후 대통령령으로 정해질 실제 위원회 구성 및 횟수 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변동될 수 있음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26조의2 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)	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업무(각각의 면허·자격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를 말함)에 대해 업무 전문성과 업무 환경, 협업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그 구체적인 범위를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업무조정위원회”)를 둠(제1항) - 업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(제2항)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범위 및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 -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에 관한 사항 - 분과위원회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 -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- 업무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3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(제3항)	의무규정

1	안 제26조의2 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)	○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, 부위원장은 제5항제4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함(제4항) ○ 업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됨(제5항) 1.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0명 이상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자단체 및 시민단체, 소비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10명 이상 3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4. 보건의료인력의 면허·자격에 관한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 ○ 업무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음.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함(제7항) ○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둠(제9항) ○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조정위원회·분과위원회·사무국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(제10항)	의무규정
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	------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 실시 사유)
1	안 제26조의2 (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)	○	○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므로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회 구성, 운영 방법, 횟수 등의 변경 시에는 추가재정소요도 달라질 수 있음
 -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현황과 보건복지부 담당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위원회 구성과 운영 횟수 등을 가정
 - － 개정안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전체위원회와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¹⁾ 20개 직종(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, 약사, 한약사, 의료기사(임상병리사, 방사선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, 치과기공사, 치과위생사), 보건의료정보관리사, 안경사, 응급구조사, 영양사, 위생사, 보건교육사)에 대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으로 가정
 - － 안 제26조의2제9항은 개정안의 업무조정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도록 하였으나,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는 기존 인력으로 수행 가능할 것으로 보여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함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(이하 “업무조정위원회”)를 설치·운영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을 추계함
 - 추가재정소요는 위원회에 위촉된 민간위원에게 지급하는 참석 수당을 추계

1) 「보건의료인력지원법」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3. "보건의료인력"이란 다음 각 목의 면허·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.

가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

나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

다. 「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의료기사,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

라.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응급구조사

마. 「국민영양관리법」에 따른 영양사 등 보건의료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면허·자격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

하며, 위원회 민간위원 수에 참석 수당 단가 및 연간 회의 횟수를 곱하여 산출²⁾

-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산출하며, 안 제26조의2제6항에 따라 각 위원회 회의 정원은 25명으로 하되, 수당을 지급받는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중 민간위원 비중(75%)를 준용한 20명으로 함

- (위원 정수)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모두 민간위원 20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가정하고, 총 20개의 직종별 분과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가정
- (회의 횟수) 전체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각각 연 4회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³⁾
- (참석 수당 단가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⁴⁾ 및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예산을 준용하여 30만원으로 하고, 해당 금액이 추계기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

□ 개정안에 따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5억 4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25억 2,000만원으로 추계됨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각 분과위원회별 추가재정소요(A)	24	24	24	24	24	119	24
추가재정소요 (C=A×위원회 수(21))	504	504	504	504	504	2,520	504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- 2)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기본경비로 충당하는 것으로 가정
- 3) 보건복지부에 따르면,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는 직역별 분과 뿐만 아니라 진료지원 간호사의 범위, 의료·돌봄 통합지원 등 분야별 논의도 수행될 필요가 있음. 다만, 개정안이 분과위원회 구성에 대한 사항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고 있으며 현시점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수요를 합리적으로 가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는 보건의료인력 직역별 분과위원회만을 고려함
- 4) 기획재정부의 「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」에 따르면, 위원회 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150,000원을 지급하되,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,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음.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에는 경비, 식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, 단순한 회의 참석 이외의 사전자료수집, 회의안전검토 등 별도의 용역제공에 대한 전문가 자문료, 국가업무조력자 사례금은 별도 편성

IV. 부대의견

-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,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

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